

●산림청고시 제2022-79호

산지전용·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고시

「산지관리법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·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을 해제 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07월 22일

산림청장

산지전용·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

1. 관계도면 : 생략 (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,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같음)

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		도면의 명칭	도엽의 번호	구역의 표시
경상남도	합천군	합천083	NI52-2-9-083	-
경상남도	합천군	합천084	NI52-2-9-084	-

※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「산지관리법」 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(<http://www.forestland.go.kr>) 및 토지이음 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
2. 열람장소

산지전용·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표시 관계 도·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
부 칙

-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.